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96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5일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권수정 의원)

1. 제안이유

- 심장병, 암,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수적임. 그러나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채소·과일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채식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당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채식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바.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사. 채식 음식점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아. 채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서울시민에게 부족한 채소·과일의 섭취를 장려하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채식” 용어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관련 시책의 수립 등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채식 교육·홍보 등의 사항(안 제6조), 채식의 날 운영 및 채식 음식점 인증 (안 제7조~안 제8조), 채식생활 실천 지원(안 제9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2조(정의)	제7조(채식의 날 운영)
제3조(시장의 책무)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10조(시행 규칙)
	부 칙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 관련

- 본 제정안은 서울시민의 암,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저하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됨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안되었음.
- WHO의 식이와 영양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보고서¹⁾에서는 심혈관계질환, 고혈압이 과일과 야채의 섭취 등 식이섭취와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암 발생과 식품섭취와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음.
 -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 신체활동을 비롯해 불포화지방산, 생선 및 야채·과일 등의 섭취가 필요하며,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 가당음료, 비만,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1일 평균 과일채소섭취량은 2018년 390.2g으로 WHO의 하루 채소·과일 섭취 권장량인 400g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²⁾

1) WHO Health Organization. 2013. Draft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3-2020. "https://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6/A66_9-en.pdf" (검색일:2021.0218.).

2)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 질병관리청, 2019

〈 연도별 서울시민 1일 평균 과일채소섭취량 현황 〉

(단위 : g)

구 분	'14	'15	'16	'17	'18
전 체	504.4	480.5	478.1	457.1	390.2
남 성	512.3	492.1	509.2	469.2	415.3
여 성	496.8	469.3	448.0	445.6	366.3

-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과일·채소 등의 섭취를 장려함으로써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의 발생을 감소하고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

나. 총칙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와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채식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채식의 정의를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식생활을 식물성 식품 중심으로 개선하여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임.

다. 기본 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안 제5조)

- 본 조례안은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시행 전략 등을 담은 종합계획으로 보통 3~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대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다. 채식 교육·홍보 및 채식의 날 운영 등 (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는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메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채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채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채식환경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채식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군부대 채식급식 제공, 학교 및

관공서와 기업의 구내식당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채식급식을 제공하는 등 채식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는 급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장려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채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채식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채식 음식점 인증 (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서울시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용역보고서³⁾에 따르면 채식 관련 국내 현황 조사에서 인프라 및 정보의 부족, 접근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채식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써 서울시내의 채식 음식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채식음식점 인증 관리기준의 설정을 비롯하여, 음식점에 대한 기술 지도, 인증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3) ㈜비온드텍스트, 서울시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용역보고서, 2020.12.11., P 13

3 종합의견

- 동 제정안은 서울시민에게 부족한 채소·과일과 같은 식물성 영양소의 섭취를 권장하여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채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
- 이는 시민의 건강증진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채식의 날 운영 및 채식 음식점 인증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9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상훈, 김제리, 김화숙,
박기열, 박기재,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 선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심장병, 암,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수적임. 그러나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채소·과일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채식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채식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채식 음식점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채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20400000014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권수정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2.04	내용문의 : 02-2180-7942
회신일 : 2021.02.04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에 따라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을 알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61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610,000천원으로 연평균 32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안 제5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채식 교육·홍보 등 비용(안 제6조)	204,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1,020,000
	채식 음식점 인증(안 제8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334,000	304,000	334,000	304,000	334,000	1,610,000
총비용(b-a)		334,000	304,000	334,000	304,000	334,000	1,610,000

○ 실태조사 비용 ≙ 90,000천원

- 실태조사 비용

$$= 30,000\text{천원} \times 3\text{회}$$

※ 참고 실태조사 단가(2021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50,000천원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
- 노숙인실태조사 68,040천원

○ 채식 교육·홍보 등 비용 ≙ 1,02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채식 교육, 홍보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채식 교육·홍보 등 비용

$$= 204,000\text{천원}$$

※ 사업비 지원단가는 2021년 서울시 예산(안)에 제출되었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 (채식 관련 교재개발, 교육과정 운영, 정책연구, 홍보 등)사업비 예산 준용하였음

○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 ≙ 5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

$$= \text{지원단가} \times 1\text{식}$$

$$= 100,000\text{천원}$$

※ 사업비 지원단가 : 2020년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사업비(100,000천원) 준용

- 서울시는 해당사업을 통해, 채식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 소재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채식 식당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장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948개 식당에 전달한 바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